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변경안

의안 번호	50
----------	----

제출년월일 : 2003.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1차변경안을 자체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 합니다

2. 주요 골자

◎ 2003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1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 취득이 총 4건으로 2,033,335천원이며

- 토지 매입이 1건 10필지(12,857㎡) 206,571천원이고
- 건물 신축이 1건 1동(1,982㎡) 1,500,000천원이며
- 건물 증축이 1건 1동(201㎡) 210,000천원이며
- 건물 매입이 1건 10동(1,208.34㎡) 116,764천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청 1층 청사 증축(재무과)

'81년 건축후 2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제개편과 사무전산화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는 사무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물의 전공간을 진단하여 구조와 미적 요소가 가미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직장생활의 질 향상과, 직무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내구년수 증가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층 청사 201㎡을 증축 하고자 함

2) 문화예술학교조성 부지매입(문화관광과)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이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체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용전리 71-1번지의 9필지 12,857㎡(장평초교 용전분교)를 매입코자 합니다.

3) 문화예술학교조성 건물 매입(문화관광과)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평초교 용전분교 건물 10동 1,208.34㎡을 매입코자 합니다

4) 감자가공식품공장 신축(농업경영과)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자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평창감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백옥포리201번지의 1필지에 감자가공식품공장 1,982㎡를 신축코자 합니다

▶ 취득재산 요구사항

(단위:㎡,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명	취득면적	추정가액	취득필지
합계	토지 1건 11필지	12,857	206,571	
	건물 3건 12동	3,391.34	1,826,764	
재무과	1건	201	210,000	
	1층 청사 증축	201	210,000	
문화관광과	2건	14,065.34	323,335	
	문화예술학교 조성 토지 매입	12,857	206,571	용전리71-1번지의 9필지
	문화예술학교 조성 건물 매입	1,208.34	116,764	건물 10동 장평초교 용전분교
농업경영과	1건	1,982	1,500,000	균비 525,000천원
	감자가공식품공장 신축	1,982	1,500,000	백옥포리 202번지

총괄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1차변경안)

(단위:m',천원)

구분		합계			당초			변경계획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5	56,076	908,813	4	43,219	702,242	1	12,857	206,571
		건물	12	6,818.54	5,680,484	9	3427.2	3,853,720	3	3391.34	1,826,764
		기타									
	매입	토지	5	56,076	908,813	4	43,219	702,242	1	12,857	206,571
		건물	1	1208.34	116,764				1	1208.34	116,764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1	5610.2	5,563,720	9	3427.2	3,853,720	2	2,183	1,710,000	
	기타										
처분	합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3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1차변경안)

(단위: m²,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합계	토지	1건 10필지	12,857	206,571			
	건물	3건 12동	3,391.34	1,826,764			
1	철콘	하리210-2	201	210,000	하반기	1층 청사증축	평창군
2	소계	토지 10필지	12,857	206,571	하반기	문화예술학교 조성	강원도 교육감
-1	학	용전리71-1	106	1,813	"	"	"
-2	"	용전리71-2	9,673	165,408	"	"	"
-3	"	용전리71-3	1,319	13,058	"	"	"
-4	"	용전리71-5	152	2,295	"	"	"
-5	"	용전리72	337	5,089	"	"	"
-6	"	용전리125-1	354	6,053	"	"	"
-7	"	용전리125-4	73	1,248	"	"	"
-8	"	용전리129-6	241	4,121	"	"	"
-9	"	용전리407-7	228	3,899	"	"	"
-10	"	용전리440	374	3,587	"	"	"
3	철.콘	용전리71-2	1,208.34	116,764	하반기	문화예술학교 조성	강원도 교육감
4	철골	백옥포리202	1,982	1,500,000	"	감자가공식품공장 신축	평창군
			이하	여백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m' 이상)---

3.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3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중요재산이 대상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재산의 처분기준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일단의 토지 면적이 ---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

(나) 일단의 토지면적이 --- 2000㎡이하로서 81.4.30. 이전 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가)①의 규모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라) ⑥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